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주택법」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,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19. ~ 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5제1항 중 “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, 이하”를 “이하”로 한다.

제36조의3제1항 중 “3년(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)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5(일시적 2주택) ① 법	제28조의5(일시적 2주택) ① ----
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	-----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	-----
주택”이란 국내에 주택, 조합원	-----
입주권,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	-----
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	-----
주택, 조합원입주권, 주택분양	-----
권 또는 오피스텔(이하 이 조	-----
및 제36조의3에서 “종전 주택	-----
등”이라 한다)을 소유한 상태에	-----
서 이사·학업·취업·직장이	-----
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	-----
1주택(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	-----
에서 “신규 주택”이라 한다)을	-----
추가로 취득한 후 3년(종전 주	-----이하 --
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「주	-----
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	-----
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	-----
에는 2년으로 하며, 이하 이 조	-----
에서 “일시적 2주택 기간”이라	-----
한다) 이내에 종전 주택등(신규	-----
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	-----
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	-----
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	-----

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)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. ②·③ (생략) 제36조의3(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)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신규 주택(중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)을 취득한 날부터 <u>3년(중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)</u>을 말한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36조의3(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837